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분야

■ 홍문관

판례·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 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90도2178, 90. 12. 11)

요지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 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①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6. 7.부터 공소외 한배선이 1978년경 조성하여 경영하여 온 제일개발 축산목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3, 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에 대한 청소, 풀베기, 사료급식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해 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목장의 경영문제에 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업주인 한배선의 정화시설설치의 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어기거나 폐기물관리법 또는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한배선과 공모하여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위 한배선의 정화시설설치의 무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하에서 피고인이 한배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폐기물분야

판례·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분뇨를 버리는 행위”的 의미

(대법 84도1738호, 84. 12. 11)

요지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유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분뇨를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오물청소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환경보전법 제39조에 규정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오물청소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리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바, 이러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친 분뇨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분뇨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고 하여 위 환경보전법 제37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에 맞게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방출하는 방류수의 수질을 구체

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 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2호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쳐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소론 이○○ 등 진술조사나 피의자 신문조사 및 검증조사의 각 기재는 원심이 믿지 않고 배척한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판례•가. 구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의 의미

나. 제1심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이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인지 여부

(대법84도2248호, 86. 7. 22)

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한다.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및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 12. 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동물의 사체, 분뇨, 진개 또는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동물의 분뇨”라 함은 위에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최○석이 경영하는 도축장에는 가축의 도축해체시에 생긴 오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개의 찌꺼기 걸름정화조, 6개의 침전정화조, 1개의 약품처리조 및 오물보관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축해체작업을 할 때에 도살된 소나 돼지의 내장에서 나오는 분뇨 등은 1차로 대부분 따로 수거되어 오물보관창고에 보관되고 남은 분뇨와 혈액 등은 해체작업에 사용된 물과 함께 위에서 본 제1, 2 찌꺼기 걸름정화조 및 제1내지 제6침전정화조를 순차로 거쳐 마지막으로 약품처리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정화조 등을 거치는 동안 분뇨 등의 오물은 대부분 정화조에 침전 여과되며 마지막 약품처리조에서 또 다시 남은 찌꺼기를 침전시킨 다음 침전된 찌꺼기를 제외한 폐수만을 차량에 수거하여 이를 부근임야(개간된 밭)에 버려왔고 이와 같은 처리과정은 행정 당국으로부터 용인되어 왔으며, 이 사건 폐수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거된 폐수로서 행정당국의 용인하에 위 임야에 버렸다는 것이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김○환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이 증거보전으로 시행한 검증조사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인정과 같은 정화과정을 거친 폐수는 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 강○원이 이 사건 폐수를 버린 현장에는 물을 부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분뇨 등의 찌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폐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건위생을 해칠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란 동물의 분뇨 그 자체 및 동물의 분뇨 자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한 것은 앞서 본 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폐수가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물의 분뇨가 조금이라도 섞여있는 폐수는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동물의 분뇨”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②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견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환경보전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수도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 바,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 하여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유죄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뿐이고,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든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바,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위의 수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단서 및 동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점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램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90도1348, 90. 9. 14)

요지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폼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램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6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제5호 소정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나.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2. 나.(5)

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전단, 제43조제1항제6호

다.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의 권문상과 공동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 3. 14부터 7.5경 까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공공수역에 무기물류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의 하치장을 설치한 후, 인근의 건축업자들로부터 그들이 건축업을 하는데서 나오는 건축물폐재류를 15톤짜리 트럭 1대분에 금 10,000씩을 받고 1일 평균 2,000톤씩 공공수역인 위 하치장에 버리도록 한 다음, 불도우저 등으로 매립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매립공사에 사용한 폐기물에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오래된 빌딩을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 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램을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②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전단, 제43조제1항제6호,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2. 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주택의 제거에 따라 발생된 폐재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전단 소정의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일반산업폐기물 중 무기물류산업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램(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2. 참조)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6호 소정의 “제24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③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제5호 소정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④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 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

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 91도30, 91.3.12)

요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 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구폐기물 관리법(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 윤활유상사란 상호로 폐유수집 및 판매를 하는 이른바 폐유업자로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 업으로 1987.2. 경부터 피고인 경영의 위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윤활유를 교환하여 주면서 나오는 폐유를 월평균 1 드럼(200리터들이)씩 수집하고, 또 서울영등포, 천호동 등지에 산재하여 있는 100여군데 밧데리 가게의 주인들로부터 폐유 1드럼당 20,000원에 평균 200드럼을 구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물공장 사장 강 명불상자, 한진단조연마공장 사장 박명불상자 등 7개 공장 등에 1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여 위 각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하여 그때부터 1990.1.14까지 사이에 합계 7,452드럼 시가 186,300,000원 상당의 폐유를 수집, 보관, 운반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6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②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를 받은자(이하 산업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폐기물의 재생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는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이 경우에 신고의 대상인 여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는 위와 같은 산업폐기물처리행위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음은 같은 법 제23조 제1,2항 및 제24조 제1항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판례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제2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 91도792, 92. 2. 14)

요지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1987. 5. 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 가(4)에 규정된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칙 제12조가 살아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토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04호, 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 5. 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90. 10. 26. 총리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2목 가(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제2조 제3호는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987. 5. 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이하 같

다)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은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살아 있는 토끼”가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별표 1의 2목 가(4)가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토끼라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 있는 이 사건 폐토끼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